

2021년 상반기 영광군 자체감사결과 공개

□ 종합감사

○ 기간 및 범위

구분	감사기간	감사범위	비고
대마면	2021. 3. 9.~3. 12.	2018. 2. 24.~감사일 현재	
낙월면	2021. 5. 11.~5. 14.	2018. 3. 24.~감사일 현재	

○ 감사반: 감사팀장 등 5명

○ 중점 감사사항

- 세출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 사회복지분야 처리실태 및 민원서류 처리 적정성 여부
- 각종 사업 설계 및 공사 시 규정 준수 여부 등

○ 감사결과

구분	총 지적건수(건)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
	계	행정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추급	기타	
대마면	22	14	8	22	12	10	2,160	1,893	-	267	-	주의 25
낙월면	22	13	9	22	13	9	1,146	976	170	-	-	주의 17

□ 기동감찰

○ 기간 및 대상: 2021. 7. 19.~7. 22./ 건설공사 현장 3개소

○ 감찰반: 3명(군 2, 명예감사관 1)

○ 중점 감찰내용

-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여건 부합 여부
- 품질관리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3건(시정 3)
- 재정상 조치: 3건, 17,933천 원(감액)

I 대마면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① 회계관직 부재중 대리권자 미지정

-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항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재무관 및 지출원의 회계관직을 갖고 있는 면장·부면장이 출장 및 연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회계관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후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재무관 및 지출원 부재 중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없이 41건, 107,315천 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을 발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회계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② 민간행사 보조사업 관리 소홀

-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보조금의 확정)에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2건), 정산검사 미실시(1건), 확정통지 미실시(4건) 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징구하고, 정산검사 실시 및 확정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토록 지도
-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③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및 관리 소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 근무지의 국내출장시의 여비에서 여비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한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되, 출장자가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자가용 등을 사용한 실비 증빙 미제출 및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 등 근무지 외 출장여비 지급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여비를 지급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 초래함

- ⇒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출장여비와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회수, 관련 규정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 재발방지(시정 조치)

④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13조제7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이 경우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이고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서명누락 및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 12건에 대하여 보완요구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69건에 대하여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 관계법령 등 연찬을 통해 동일사례 발생금지(주의 조치)

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소홀

-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에는 ①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②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③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농지 소유 상한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을 발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징구,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신청자의 총 농지 소유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이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지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주의 조치)

⑥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2조(기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5호(기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르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하천시설 정비사업 부지조성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와 균유지 중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어 대부계약이 해지된 농지를 농업직불금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명에게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220,1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 부당하게 지급된 농업소득직접지불금(13건/ 220,100원)을 회수 조치,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불금 지불 시 농지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업무 추진 철저(시정 조치)

⑦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법」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에 따라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함

- 또한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원부의 관리를 위하여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 요령’에 따라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유권 변동, 경작확인대상 정비, 임차기간 만료농지 갱신, 농가주 사망 말소자 정리, 자격미달자 농지원부 편철 등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하여야 함
- 농지원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 총 476건(소유권 변동 22, 임차기간 종료농가 414, 사망말소자 3, 한세대 농지원부 중복 2, 경작미달자 8, 경작대상확인대상 27)에 대하여 미정비 대상이 확인되는 등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을 소홀히 함

⇒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을 숙지하여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등 농지원부 관리 업무 관리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주의 조치)

⑧ 농업피해조사 관리대장 작성 소홀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시행 2020. 1. 1.,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 51호]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행정·지도),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업인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조사대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피해조사대장은 조사공무원, 이·동장(통장) 또는 마을대표 및 피해 농가가 조사자로 연명하여 날인하고 읍·면·동장이 확인자로 서명 날인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 2018~2020년도 농업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면장이나 이장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거나 피해 사진을 대장에 첨부하지 않는 등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함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농업재해 피해조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소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①」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대상으로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말소된 경우,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정도 및 유형이 변경된 경우 등 유효하지 않는 장애인등록증은 회수 폐기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 사망 장애인 18명에 대해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분실 및 장애등급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재발급을 신청한 3명에 대해서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분실신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등록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말소된 경우,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정도 및 유형이 변경된 경우 등 유효하지 않는 장애인등록증은 회수 폐기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 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 장애인등록증이 부당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 관리를 철저(시정조치)

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확인 미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반기별로 현장 방문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확보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복지급여담당자는 급여수급자 스스로 금전소비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여 금전관리 가능 시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및 보관하여야 하나,
- 기초수급자인 의사무능력(미약)자 2명이 급여관리자 지정 없이 본인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는데도 급여수급자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소홀히 함

⇒ 급여관리자가 미지정된 의사무능력(미약)자 2명에 대하여 스스로 금전 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금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리 및 보관하고,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의사무능력 수급자의 급여가 본인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 관리 철저(시정조치)

⑪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부적정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제비율 2019년 기타경비는 4.5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 △△마을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원가계산 제비율 2019년 기타경비를 규정보다 4.21%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였음에도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275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

⇒ 원가계산 제비율 2019년 기타경비를 부적정 적용하여 과다 집행된 사업비 275천 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업무연찬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조치)

⑫ 대마 ◇◇2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에도,

- 대마 ◇◇2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사급자재인 용접철망(# 6-100*100) m²당 단가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6,204원으로 계상되어 당시 조달단가인 4,040원 보다 2,164원이 높게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20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

⇒ 사급자재인 용접철망 단가의 부적정 적용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205천 원에 대해 회수조치, 업무연찬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 (시정 조치)

⑬ ◎◎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에도,
- ◎◎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수량산출서 상에 개거 거푸집(유로폼) 수량이 실제 소요량 보다 7.1m²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26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

⇒ 개거 거푸집(유로폼) 수량산출 부적정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265천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업무연찬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조치)

⑭ 대마면 □□리 ▲▲천 보수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에도,
- 대마면 □□리 ▲▲천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 상에 개거거푸집이 합판(6회)로 반영되어 있으나 공사 준공사진 확인결과 유로폼을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46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

⇒ 개거 거푸집 부적정 적용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469천 원에 대해 회수조치, 업무연찬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조치)

① 민간행사 보조사업 관리 소홀

-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보조금의 확정)에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미징구(2건), 정산검사 미실시(3건), 확정통지 미실시(2건) 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징구하고, 정산검사 실시 및 확정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토록 지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결재)하지 않았으며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관리를 소홀히 함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업무연찬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주의 조치)

③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두고 기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했음에도
- 준공된 공사 91건에 대하여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수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함

⇒ 하자검사를 미실시한 해당 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 하자검사 실시(시정 조치)

④ 당직근무규정 미 준수

- 「영광군 당직근무 규정」 제14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제2항에 따르면 당직반장은 당직신고를 한 후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부책 및 물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 이를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5조(당직편성)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경우에는 당직반원이 당직반장의 임무를 대행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8조(당직일지)에는 당직 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은 당직 책임자가 이를 당직일지에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직근무를 종료하고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나 당직근무일지 작성 관리 소홀 및 당직상황보고를 소홀히 했음에도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및 복무점검을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해 지는 결과를 초래함

⇒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결과 상황보고 철저 및 당직근무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토록 지도, 관련 규정 숙지 및 복무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 발생 방지(주의 조치)

⑤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복무관리 소홀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및 영광군 유연근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새울행정시스템)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음.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한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활용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36건 미등록하였음에도 이를 감독·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 소홀히 함

⇒ 유연근무 활용 시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 철저(주의 조치)

⑥ 민원발급기 증지 수입금 정산 소홀

-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제15조(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따르면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

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계기·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계기·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일일 결산하여야 하나 67회에 걸쳐 일일결산하지 않고 1일에서 최대 19일 이후 결산하는 등 증지수입금 정산업무 소홀히 함

⇒ 「영광군수입증지조례」 규정에 의거 증지대금의 일일 결산을 확행하는 등 업무 처리 철저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주의 조치)

⑦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2018년 경로당 운영지원 지침 시달’ 【노인가정과-18898(2018.4.20.)】 및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매뉴얼 배부 및 정산 철저’ 【노인가정과-61812(2020.12.30.)】 에 따르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 사업별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및 서식에 의하여 회계마감일(12.31) 이후 10일 이내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낙월면에서도 2018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경로당 등 5개 경로당으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공동부식비’ 의 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정산 시 구비되어야 하는 증빙서류 미첨부, 회계장부 미비, 보조금 과목 오류 사용, 허용범위 외(5만원) 현금사용 등의 부적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 보조금 관리 소홀히 함

⇒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매뉴얼」 을 연찬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사전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비의 합법적 집행 및 투명성 제고하도록 지도(주의 조치)

⑧ 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에게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수급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쓰이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타인의 급여관리를 원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관리·사용능력을 확인하여 본인관리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정신 및 발달장애인 및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등 급여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2명 중 급여관리자를 지정한 1명을 제외한 1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2018년 5월 징구한 이후 반기별 확인·점검하지 않았으며, 급여관리자를 지정한 1명에 대해서 매 반기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관리 상황 확인을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에 소홀히 함

⇒ 기초수급자 중 정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조사하여 급여관리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급여관리자에 대하여 2020년 급여관리 상황을 재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시정 조치)

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2조)에서는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회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인 농업인이 받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받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 결과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자체에 전송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위의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 저류지 설치사업을 위해 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고 2019년 전용허가 된 농지 295㎡에 대하여 직불금 31,750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 부당하게 지급된 농업소득직접지불금(1건/ 31,750원)에 대해 회수 조치, 업무연찬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조치)

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농지법」 제7조제3항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농지 소유 상한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신청자의 총 농지 소유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지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주의 조치)

⑪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부적정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제비율 2020년 기타경비는 4.0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리 △△△△ 웬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원가계산 제비율 2020년 기타경비를 규정보다 0.503%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였음에도,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1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

⇒ 원가계산 제비율(기타경비) 부적정 적용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19천 원에 대해 회수 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 철저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방지(시정 조치)

⑫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에도,
- ○○○○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등 3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환경보전비가 각각 반영되어 있으나 준공 서류 확인결과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462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

⇒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462천 원 회수 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변경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 과다 집행 사례 발생 방지(시정 조치)

⑬ 낙월 ■■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도록 경제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에도,
- 낙월 ■■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가공이 필요 없는 철근에 대해서도 일괄 가공 및 조립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제경비 포함 463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

⇒ 철근 가공 및 조립품 부적정 적용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 463천 원 회수 조치, 업무연찬 및 설계도서 작성 철저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시정 조치)

① ☆☆☆소하천 정비사업(2차분)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여야 함에도,
- ☆☆☆소하천 정비사업(2차분)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찰결과 답진입로 11개소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6개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답진입로를 활용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기동감찰 당일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경비 포함 2,794천 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음.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공사비 2,794천 원 상당액은 감액 등 설계변경 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감독업무 철저(시정 조치)

② ★★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여야 함에도,

- ★★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찰결과 토공규준틀 42개(수평 35, 비탈 7)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물량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기동감찰 당일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경비 포함 2,387천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음.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공사비 2,387천 원 상당액은 감액 등 설계변경 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감독업무 철저(시정 조치)

③ ○○○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관련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21조제1항에 의거 수급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기동감찰결과 관로 시공 중 지하매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장물보호구조물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총연장 39m)에서는 지장물보호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기동감찰 당일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경비 포함 12,752천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음.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공사비 12,752천 원 상당액은 감액 등 설계변경 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감독업무 철저(시정 조치)

IV 모범사례

「대마면 사례 1」

『청정 대마』 프로젝트 추진

면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가는 『청정 대마』 프로젝트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I 추진방침

- “대마를 맑고 푸르게” 라는 슬로건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정착
- 면민 및 기관·사회단체 공동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가치 형성

II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공원 4개소(8,286m²) 및 주요 도로변 꽃길 5개소(9.9km) 조성
- 쓰레기 무단투기장 화단 조성: 2개소 1,468m²(장보사거리, 원당제)
- 마을 앞 불법소각장 폐쇄: 홍교2리 부송마을

III 향후계획

- 소공원 4개소(8,286m²) 및 주요 도로변 꽃길(9.9km) 유지·관리
- 마을 대청소 2회(상·하반기) 추진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IV 기대효과

- 쾌적한 환경 변화로 주민 생활만족도 향상
- 환경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태청산 안골 야생화단지 조성

우리군 최고봉인 태청산 자락 안골을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힐링 여행지로 이미지 부각

I 추진방침

- 태청산의 비경인 안골 계곡과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영광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
- 아름다운 산책코스 제공으로 건강한 군민의 삶 실현

II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야생화(국화, 핑크물리 등) 식재 및 관리: 지역일자리사업 활용
- 진입로 꽃길(3km) 및 단풍길(8km) 조성
- 산책로, 쉼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객 불편 해소

III 향후계획

- 국화, 수국 등 야생화 식재, 단풍길 구절초 파종 및 유지 관리
- 국화 식재(70,000m²), 구절초 파종(150,000m²)
- 국화 재배 및 전시회 개최: 9.~10월경

IV 기대효과

- 관광지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아름다운 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품격있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낙월면 사례 1」

도서순회 방문 민원서비스 제공

도서의 특성상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해결이 쉽지 않은 도서를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감동 행정을 실현으로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 추진방침

- 도서 순회 방문 민원서비스 실시로 낙후된 도서지역 행정서비스 제공
- 소외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해소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일 정: 분기별
- 대 상: 2개소(송이도, 안마도)
- 내 용: 생활민원처리, 주요사업장 점검, 이장회의, 고충상담 등

□ 추진실적

- 1/4분기 도서순회 방문민원서비스 추진(1회): 2020. 1. 9.
- 1/4분기 도서순회 방문민원서비스 추진(2회): 2020. 3. 27.
- 2/4분기 도서순회 방문민원서비스 추진(서면): 2020. 6. 29.
- 3/4분기 도서순회 방문민원서비스 추진(2회): 2020. 7. 21.
- 4/4분기 도서순회 방문민원서비스 추진(2회): 2020. 11. 16.

□ 기대효과

-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낙월면 사례 2」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

영광군 삼형제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섬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 낙월도(상낙월도 선착장~하낙월도 선착장)
 - 안마도(선착장 및 공원, 산책로)
 - 송이도(몽돌 해변 데크)
- 사업비: 12,200천 원(인건비 7,200천 원, 재료비 5,000천 원)
- 사업내용
 - 해안도로변 꽃 식재 및 꽃박스 추가 설치
 - 도서 환경에 적합한 꽃잔디, 금잔화 등 식재
- 참여인력: 주민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

□ 추진실적

- 해안도로변 및 가로화단 꽃길 조성계획: 2020. 3. 26
-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 작업(1차): 2020. 5. 26.~5. 29.
 - 꽃 식재 및 잡초제거: 메리골드 2,300본, 숙근코스모스 1,000본, 수국 400본
-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 작업(2차-장미 150본): 2020. 6. 11.~6. 12.
-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 작업 결과보고(2회): 2020. 6. 9./7. 1.
- 꽃길 조성을 위한 풀베기 작업 실시: 2020. 9. 10. ~ 9. 23.
-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 작업(3차-소국 180본) : 2020. 09. 26.
-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 작업(4차-수국 등 4종 16,100본) : 2020. 10. 21. ~ 11. 4.

□ 기대효과

- 아름다운 해안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